

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3호 2001. 3. 5)

총 무 위 원 회
2001. 3. 23

1. 심사경과

- 가. 2001. 3. 5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1. 3. 5 총무위원회 회부
- 다. 2001. 3. 23 사천시의회 제5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, 원안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회계과장 김영고)

가. 제안이유

규제개혁정비 계획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시민편의 도모

나. 주요골자

본 조례 제11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한 항목 중 제2호의 “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” 가 제3항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사용허가 후의 관리 조치가 없어 허가사항을 위반하였을시 원상복구 명령, 사용허가 취소 등을 신설코자 함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성호영)

-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개혁시책의 일환으로 현행 조례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불편을 덜어주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: 없음